

# 변경대비표

## [집합투자규약]

1. 집합투자기구 : NH-Amundi 필승 코리아 증권투자신탁[주식]
2. 효력발생일 : 2022년 10월 14일
3. 정정사유
  - 자본시장법,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(금전차입 제한 예외 조항 추가 등)
  - 적용 법률 변경, 용어 및 문구 변경 등 (재무상태표 등)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법 용어의 변경 (공통)	대차대조표 제X 영업일	재무상태표 X 영업일
제3조(집합투자기구 의 명칭 및 종류)	①~③ (생략) ④ <u>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 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 며, 이 경우 제43조 규정을 적용한다.</u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 <u>제3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 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특정 종류의 수익증 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3항 각 호 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</u>
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 무)	① (생략)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이를 관 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 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 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 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.  ③ (생략)	① (현행과 동일)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이를 관 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 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 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 성 여부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 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</u>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.  ③ (현행과 동일)
제9조(수익권의 분 할)	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증권의 종류별 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종의 수 익증권으로 표시한다.	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증권의 종류별 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종의 수 익증권으로 발행한다.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<u>수익증권 발행가액</u>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 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 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<u>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</u> 전액이 납입된 경 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

	따른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	한다)에 따른 <u>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u>
제14조(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)	<p>제14조(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익자의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</li> <li>2.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</li> </ol> <p>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<u>집합투자업자</u>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류 및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14조(수익자명부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</u>(이하 “전자등록기관”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<u>전자등록기관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익자의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</li> <li>2.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</li> </ol> <p>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<u>판매회사</u>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류 및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
제15조(자산운용자 시 등)	<p>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</u> <u>한도로</u>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	<p>① 2.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및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국채증권</p>	<p>① 2.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및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국채증권 또는 <u>한국은행법</u></p>

	<p>또는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으로 구성되는 것에 한한다) 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3.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	<p>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으로 구성되는 것에 한한다) 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3.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<p>① 2. 나.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 (1)~(5) (생략) (6)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른 <u>한국주택금융공사</u>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 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.) (생략)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.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 할 수 있다. 1~2. (생략) &lt;신설&gt;</p>	<p>① 2. 나.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 (1)~(5) (생략) (6)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른 <u>한국주택금융공사</u>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 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.)  (현행과 동일)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.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 할 수 있다. 1~2. (현행과 동일) 3.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때</p>
제28조(환매연기)	<p>①~⑦ (생략) ⑧ 제3항,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에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①~⑦ (현행과 동일) ⑧ 제3항,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<u>전자등록기관</u>에 위탁할 수 있다.</p>
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개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</u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개시일 전날의 수익증권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개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</u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개시일 전날의 수익증권</p>

	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	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
제32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대차대조표</u></p> <p>2. 손익계산서</p> <p>3. 자산운용보고서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재무상태표</u></p> <p>2. 손익계산서</p> <p>3. 자산운용보고서</p>
제35조(상환금 등의 지급)	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①~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
제39조(보수)	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매 (3)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를 매일 <u>대차대조표상</u>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~3. (생략)</p>	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매 (3)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를 매일 <u>재무상태표상</u>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~3. (현행과 동일)</p>
제45조(투자신탁의 해지)	<p>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~4. (생략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4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~4. (현행과 동일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4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
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/p>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동일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</u></p>

	<p>3~5. (생략)</p> <p>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</u> 또는 <u>전자우편</u>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	<p><u>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</u></p> <p>3~5. (현행과 동일)</p> <p>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</u>, <u>전자우편</u> 또는 이와 비슷한 <u>전자통신</u>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
부칙	-	(변경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 변경대비표

## [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: NH-Amundi 필승 코리아 증권투자신탁[주식]

2. 효력발생일 : 2022년 10월 14일

3. 정정사유

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
-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및 변동성(표준편차) 반영(23.48%, 2등급 유지)
- 자본시장법,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(금전차입 제한 예외 조항 추가 등)
-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발생내역 추가
- 적용 법률 변경, 용어 및 문구 변경 등 (재무상태표 등)
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법 용어의 변경 (공통)	대차대조표 제X 영업일	재무상태표 X 영업일
<요약정보>	NH-Amundi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<u>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</u> 등을 감안하여 (2)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NH-Amundi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<u>실제 수익률 변동성</u> 등을 감안하여 (2)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[요약정보]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-	* 투자비용 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  * 투자실적추이/운용전문인력 -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2. 집합투자 기구의 연혁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5. 운용전문 인력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8.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대상	가. 투자 대상 (생략) ②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 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 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 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및 법 제234조	가. 투자 대상 (현행과 동일) ②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 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 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및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

	<p>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(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으로 구성되는 것 에 한한다) 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③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 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 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	<p>투자증권(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으로 구성되는 것에 한한다) 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③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 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 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 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 다)</p>
	<p>나. 투자 제한 동일종목 투자제한 나. ...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 공사법</u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에 따 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u>한국주택금융공사 법</u>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 다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 여하거나 예치 ·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 <p>금전의 차입 가.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 하지 못합니다.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 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①~② (생략) &lt;신설&gt;</p>	<p>나. 투자 제한 동일종목 투자제한 나. ...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 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 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 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 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 ·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 <p>금전의 차입 가.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 지 못합니다.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①~② (현행과 동일) ③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 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 로서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때</p>
제2부. 10.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위험	<p>다. 기타위험 투자신탁 해지 위험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(의무 해 지) 1~4. (생략)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 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</p>	<p>다. 기타위험 투자신탁 해지 위험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(의무 해지) 1~4. (현행과 동일)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</p>

	<u>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.</u>	<u>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.</u>
	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-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에 의해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/p> <p>- 추후 이 투자신탁의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'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'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며,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</p>	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.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23.48%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/p>
	<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>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	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u>대차대조표</u>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합니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	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u>재무상태표</u>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합니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<신설>	<p>주2) <u>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</u></p> <p>[표: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구성 및 직전회계기간 중 발생 내역(단위: 천원)]</p> <p>(현행과 동일)</p> <p>- 상기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신탁이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비용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[직전 회계연도 : 2021.08.14 ~ 2022.08.13]</p>
		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. 이익배분	<p>(2) 상환금등의 지급 (생략)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	<p>(2) 상환금등의 지급 (현행과 동일)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
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최근 결산일 및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5부.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	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-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에 위탁하여야 하며,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 <신설>	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-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에 위탁하여야 하며, <u>전자등록기관</u>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  - <u>전자등록기관</u> 은 <u>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.</u>
제5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(1) 의무해지 (생략) 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	(1) 의무해지 (현행과 동일) 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다만, <u>법 제6조제6항</u> 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
	(2) 임의해지 (생략) -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(50억 미만)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,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	(2) 임의해지 (현행과 동일) -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(50억 미만)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,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
제5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가. 정기보고서 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(생략) ② 결산서류 -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 · <u>대차대조표</u> · <u>손익계산서</u> · <u>자산운용보고서</u>	가. 정기보고서 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(현행과 동일) ② 결산서류 -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 · <u>재무상태표</u> · <u>손익계산서</u> · <u>자산운용보고서</u>

	<p>(2)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</u>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 <p>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</p> <p>- 신탁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	<p>(2)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</u>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 <p>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</p> <p>- 신탁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
나. 수시공시	나. 수시공시	
<p>(2) 수시공시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생략)</li> <li>·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/li> </ul> <p>(이하 생략)</p>	<p>(2) 수시공시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현행과 동일)</li> <li>·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<u>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</u></li> </ul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	
제5부. 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
## 변경대비표

### [간이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: NH-Amundi 필승 코리아 증권투자신탁[주식]
2. 효력발생일 : 2022년 10월 14일
3. 정정사유
 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운용실적 개선
  -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및 변동성(표준편차) 반영(23.48%, 2등급 유지)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<요약정보>	NH-Amundi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<u>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</u> 등을 감안하여 (2)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NH-Amundi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<u>실제 수익률 변동성</u> 등을 감안하여 (2)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[요약정보]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-	* 투자비용 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개선  * 투자실적추이/운용전문인력 -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개선